

국토교통부공고 제2023-964호

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8월 8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건설기계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「건설기계관리법」이 개정(법률 제19365호, 2023.4.18. 공포, 10.19.시행)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건설기계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위탁받은 자에게 내도록 하고, 지자체 등이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3조제1항 및 제2항)
- 나. 정비명령을 받은 건설기계 소유자가 정비를 한 후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정비업자가 발행하는 정비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(안 제31조제4항)

다. 「국가기술자격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한 건설기계 제작·조립자의 기술인력 기준 등 현행화(안 별표 11, 별표 13, 별표13의 2)

### 3. 의견제출

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9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건설산업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, 정책자료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개정(안)	수정(안)	사유

나. 성명(법인·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 
건설산업과
- 전자우편 : [jabichung@korea.kr](mailto:jabichung@korea.kr)
- 팩스 : 044-201-3537